

# 연구윤리규정

2015.12.30. 제정      2018.07.01. 일부개정      2022.06.24. 일부개정      2022.11.21. 일부개정  
2023.01.30. 일부개정      2023.04.04. 일부개정      2025.11.27. 일부개정

<연구지원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명대학교(이하 “본 대학교” 라 한다)에서 이루어지는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자”란 「학술진흥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한 연구자를 말한다.
2. “연구 원자료”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가 실험, 관찰, 조사 등을 거쳐 수집한 가공 이전의 자료와 문헌 등을 말한다.
3. “연구자료”란 연구 원자료를 가공한 자료와 이를 활용한 2차 자료 및 문헌을 말한다.
4. “연구결과”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얻은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한 체계화된 결론을 말한다.
5. “연구결과물”이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를 기술한 보고서·논문·간행물·단행본 등의 학술적 저작물과 지식재산을 말한다.
6. “제보자”란 진실하게 부정행위 주장을 제기한 자를 말한다.
7. “피조사자”란 제보의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를 수행하던 중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8. “예비조사”란 본조사 실시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적인 사실확인 절차를 말한다.
9. “본조사”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10. “판정”이란 조사결과를 확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대학교의 교원을 포함하여 연구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였

거나 관련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적용범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된 사항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5조(연구자의 책무와 윤리)**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04.04.)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제6조(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중복게재, 부당한 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그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04.04., 2025.11.27.)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

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단, 연속 논문은 제외)

5.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8.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9. (삭제 2025.11.27.)**

10. 기타 위원회가 자체적인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부정행위

**제6조의 2(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라 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제1항 각 호를 말한다.**

[본조 신설 2025.12.27.]

**제7조(부정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유형) ① 표절에 포함되지 않는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27.)**

1. 독창성이 인정되지 않는 타인의 표현 또는 아이디어를 이용하는 경우
2. 여러 개의 타인 저작물의 내용을 편집하였다도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출처 표시를 한 편집저작물의 경우
- 3. 알려진 기술을 응용하는 연구용역 또는 이를 활용하는 일반용역의 결과물(보고서 등)을 이용하는 경우(단, 제30조의3 제2항의 사항을 준수할 경우)**
4. 기타 관련 학계 또는 동일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 표절이 아닌 것으로 분명하게 평가되고 있는 경우

② 부당한 중복게재에 포함되지 않는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을 인지할 수 없는 다른 독자군을 위해 일차와 이차 출판 학술지 편집인 양자의 동의를 받아 출처를 밝히고 게재한 경우
2. 연구자가 자신의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논리와 이론 등을 심화 발전시켜 나가는 연구과정(국내·외 학술대회에서 발표 후 출판된 논문 및 자료의 경우 포함)에서 적절한 출처 표시를 한 후속 저작물
3. 이미 발표된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을 모아서 출처를 표시하여 저서로 출판하는 경우

4.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의 내용을 연구업적에는 해당하지 않는 출판물에 쉽게 풀어 쓴 경우
5. 기타 관련 학계 또는 동일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 부당한 중복게재가 아닌 것으로 현저하게 평가되고 있는 경우

## 제2장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5.11.27.)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보고 및 제보요건 충족여부 심의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산학협력단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된다. (개정 2018.7.1., 2022.6.24., 2022.11.21., 2023.1.30.)

②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은 계열별(인문사회/자연공학/예체능) 1명을 추천받아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연구지원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1.21., 2023.1.30.)

**제10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무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12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연구지원팀에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관련된 내용과 증거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하며, 언론매

체 등에 의해 공개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제보자 없이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제보자의 권리보호)** ① 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여야 하며, 제보자의 성명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공개해서는 안된다.

② 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③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4조(피조사자의 권리보호)** 위원회는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이의제기 및 변론권 보장)**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6조(예비조사)** 예비조사는 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위원장은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25.11.27.)

**제17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 예비조사는 제보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착수 후 3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1.27.)

②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역산하여 만 5년이 경과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③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6조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부정행위가 제보일로부터 역산하여 만 5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제18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한 후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단, 허위제보 또는 익명제보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1.27.)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1.27.)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결과

3. 본조사의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제19조(본조사) ① 본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제20조에 따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7.)

② 본조사는 본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한다.

③ 본조사위원회가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1회에 한하여 기간연장 요청을 할 수 있다.

제20조(본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본조사위원회 위원구성 및 위촉기간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본조사위원회 위원장은 본조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조사 위원 전체에서 외부인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2. 조사 위원 중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50% 이상으로 하되,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④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본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⑤ 위원장은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때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신설 2025.11.27.)

제20조의 2(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건의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거나 하였던 자

3. 그 밖에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 조사위원은 피조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5.11.27.]

제21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서 또는 서면진술서를 출석일 전일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5.11.27.)

②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

를 취할 수 있다.

**제22조(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본조사위원회는 본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본조사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1.27.)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결과
3. 본조사위원 명단
4.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의 역할과 부정행위 의혹의 사실여부
5.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6.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7. 검증결과에 따른 판정결과

**제23조(판정)**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판정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장은 조사에 따른 판정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 후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04.04., 2025.11.27.)

② (삭제 2023.04.04.)

③ (삭제 2025.11.27.)

④ 예비조사 착수 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5.11.27.)

**제24조(이의신청)**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본조사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1.27.)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7.)

③ 위원회는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비조사 결과에 대하여는 예비조사위원회 구성 형태로, 본조사 판정 결과에 대하여는 본조사위원회 구성 형태를 갖추어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27.)

④ 이의신청은 최초 예비조사 및 본조사 결과에 대해 각 1회에 한하여 허용한다. (신설 2025.11.27.)

##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검증·조치·보고

제25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조사)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부정행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제6조의 2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에 관련된 제보를 접수하거나 이관 받은 경우 검증·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2. 기타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

② 위원장은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보를 접수한 날, 이관을 받은 날 또는 제2호에 따라 부정행위를 인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정행위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 조사의 방법은 제16조 내지 제22조 규정을 준용하여 조사할 수 있으나,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④ 위원장은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부정행위 조사 절차·일정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장은 부정행위 조사를 착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부정행위 조사를 종료하여야 하고, 부정행위 조사결과는 위원회에 보고를 거친 후 10일 이내에 부정행위 조사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위원장은 부정행위 조사를 충실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항에 따른 조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제6항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제보자, 피조사자에게 연장사실과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5항에 따라 부정행위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위원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⑩ 위원장은 제9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의신청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제9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5.11.27.]

## 제5장 검증결과 조치

제26조(결과에 대한 조치) ① 위원회는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총장에게 징계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이 대학교 구성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에 어긋나는 제보를 하였을 때에는 총장에게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③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될 경우 연구자의 소속기관 및 해당 논문의 발간 학술단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연구지원기관에 10일 이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04.04.)

**제27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연구지원팀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공익상 필요에 의해 공개 하더라도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8조(비밀엄수)**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위원회 위원·간사 등을 포함)는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해서는 안된다. 단,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 제6장 기타

**제29조(연구윤리에 대한 교육)** ① 총장은 연구자가 연구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의 규범,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방법 및 검증절차 등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된 연구자는 협약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으로부터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0조(연구 환경의 개선)** 총장은 연구자가 연구 활동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고, 또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04.04.)

**제30조의 2(대학의 역할과 책임)** ① 총장은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수행 과정에서의 갈등이나 분쟁을 중재하거나 조정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총장은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연구업적 관리 등을 할 경우 관련 연구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5.11.27.]

**제30조의 3(연구성과의 사용)** ① 연구자는 연구계획서, 연구문헌 등을 작성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자신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데이터 및 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타인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데이터, 연구저서 등을 사용하는 경우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연구자는 이미 게재·출간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 및 인용 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출간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는 전공 분야의 특성에 부합하고 해당 학계에서 인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게재·출간을 할 수 있으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학위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개의 논문 또는 저서로 게재·출간하는 경우
2. 이미 게재·출간된 논문 또는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위논문에 포함시키는 경우
3. 연구용역 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논문 또는 저서로 게재·출간하는 경우
4. 이미 게재·출간된 논문 또는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구용역 보고서에 포함시키는 경우
5. 이미 게재된 논문들을 모아 저서로 출간하는 경우
6. 동일한 논문이나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일 또는 다른 언어로 게재·출간하면서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7. 학술지에 짧은 서간논문(letter, brief communication 등)을 게재한 후 이를 긴 논문으로 바꾸어 게재·출간하거나, 연구 데이터, 해석 또는 자세한 연구수행과정의 정보 등을 추가하여 게재·출간하는 경우

[본조 신설 2025.11.27.]

제30조의 4(이해상충의 내용) 이해상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공정한 전문가적 판단 또는 연구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1. 금전적 이해상충: 연구와 관련된 연구자의 금전적 이익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2. 인간관계적 이해상충: 개인적인 친분이나 소속 기관의 영향 또는 개인적인 갈등이나 연구 경쟁 등 사적인 인간관계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3. 지적인 이해상충: 특정한 연구 종류나 분야에 관한 종교적 신념이나 세계관적 내지 도덕적 소신 또는 이론적 확신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4. 역할충돌에 의한 이해상충: 교육, 봉사, 외부활동 등 소속 기관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 연구 활동과 충돌함으로써 유발되는 경우
5. 기타의 이해상충: 그밖에 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본조 신설 2025.11.27.]

제30조의 5 (이해상충의 관리) ① 연구자는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현실적인 또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모두 공개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계획서에 연구비 지원내역, 후원자, 소속 기관, 그밖에 제30조의 4에 규정된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는 사유들을 명시하여야 하고,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에도 학술지에 이를 밝혀야 한다.

필요한 경우 연구대상자들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

③ 연구자는 미성년자(만19세 미만)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이하 '특수관계인 등' 이라 함)을 본인의 연구과제에 참여시키고자 할 때 사전에 연구지원팀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연구자는 특수관계인 등과 논문을 공저하고자 할 때 사전에 연구지원팀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5.11.27.]

제30조의 6 (연구자의 권익보호) 모든 연구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어느 누구도 연구를 이유로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 신설 2025.11.27.]

제31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상위법을 준용하거나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04.04.)

[전문개정 2015.12.30., 2025.11.27.]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4월 4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5년 11월 27부터 시행한다.

